

제3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의결안건 제219호(2021) 관련)

2022. 2. 9.

증 권 선 물 위 원 회

1. 일 시 : 2022년 2월 9일(수) 14:10~18:16

2. 회의방식 : 온-나라 PC 영상회의

3. 출석위원

도 규 상 위 원 장

이 명 순 위 원

이 준 서 위 원

박 재 환 위 원

송 창 영* 위 원

*의결 제6호 회피

4. 회의경과

□ 의결안건 제219호(2021) 『(주)신한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재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일반은행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위원님들이 간담회 논의를 통해서 설명서 내용이 현저히 부실한 제안서가 교부된 것은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에 해당되므로 금감원 원안에 동의하셨음. 그러나 과태료를 부과한 금감원 원안에 동의는 하되, 뒤에 설명서가 완전히 백지를 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내용은 기술되었으니 동기를 '과실'로 조정하도록 위원님들이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함. 다만, 향후에 설명서 내용이 부실한 것을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으로 지적함에 있어서는 정도의 문제가 있을 것 같음.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금감원 원안에 동의를 합니다마는 향후 유사한 취지로 지적을 할 경우에는 설명서 내용이 과연 '설명 의무 이행'을 위한'이라는 수식어에 부합하는지, 이 부분을 항상 정밀하고 엄격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림.

○ (위원장) 제219호 안건은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하겠음. 금감원에서는 (주)신한은행이 ■■ ■■ 펀드 총 xxx건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상품의 중요사항에 해당되는 투자대상자산 및 투자전략에 대한 내용이 누락된 상품제안서만 영업점 PB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충분한 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주)신한은행에 대해 舊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9호 나목

에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였음. 금감원은 유사한 상품 중 상품제안서와 함께 집합투자규약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지적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집합투자규약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를 조치대상으로 보아 위반건수를 xxx건으로 산정하였음. (주)신한은행이 운용사가 제시한 상품제안서만을 교부한 경우 해당 펀드가 상품제안서에 제시된 투자대상자산 외의 자산에만 투자되더라도 집합투자규약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투자자가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설명의를 이행하기 위한 충분한 설명서'를 교부할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한편, 금감원에서는 과태료 부과액을 산정할 때 위반동기를 '상'으로 보았으나, (주)신한은행이 설명을 위한 자료 일체를 누락한 것은 아니라는 점과 본 건 조치대상 펀드들 이후에 판매된 동일 유형의 다른 펀드들의 경우에도 상품제안서와 함께 집합투자규약이 PB들에게 제공되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본 건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이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는 해당 xxx건에 대해 위반동기를 '상'에서 '하'로 감경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겠음. 그 외의 다른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겠음.

○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